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24일

발의자 : 한기태의원외6인

1. 제안이유

현행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 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2조(자격) 제1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로 개정
- 제9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 되었을 때와 의원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 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자격) 제1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9 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 되었을 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영 <u>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다음</u>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자격) ①..... <u>서</u> <u>울특별시</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위원의 해촉)	제9조(감사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영등포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 <u>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u> <u>할 수 없게 된 때</u>	1. <u>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u> <u>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되었</u> <u>을 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u> <u>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u> <u>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u> <u>무에 수행할 수 없게 된 때</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